

수 신 ○○○ 귀하

민방위대 ○○○ 민방위대

주 소 서울시 성북구 ○○○

제 목 민방위대 의무해제 사실통지

귀하께서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의거 2015년 12월 31일부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의무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훈련 등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주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 신고를 생활화하고, 자연재난, 인위적 재해 발생 시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호, 구조, 복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 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직인)